

예 산 총 칙

2017년도 추경 1 회

제 1 조 2017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구 분	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	384,876,470	11,546,294
일반회계		350,523,730	10,515,712
특별회계		34,352,740	1,030,582
	기타특별회계	34,352,740	1,030,582
	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	785,189	23,556
	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	953,127	28,594
	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	390,837	11,725
	주차장특별회계	287,565	8,627
	수질개선특별회계	31,433,022	942,991
	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	503,000	15,090

제 2 조 세입·세출예산의 명세서는 별첨 "세입·세출예산" 과 같다.

제 3 조 계속비 사업은 별첨 "계속비사업조서"와 같다.

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6,481,904천원으로 한다 .

제 5 조 일반회계 지방채 상환 한도액은 11,2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